

# 감 사 보 고 서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2024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의 2025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5년 04월 09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감 사 설 재 원 (서명) 설재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226호)

감 사 김 한 응 (서명) 김한응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127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성 명 강 정 수 (서명) 강정수

직 명 동명대학교 사무처장

성 명 류 화 영 (서명) 류화영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법인 일반업무회계 : 지적사항 없음</p> <p>2. 법인 수익사업회계 : 지적사항 없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강 경 수 직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 동명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4회계연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b>1. 규정류 관리규정</b></p> <p><b>1) 규정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b></p> <p>본 규정 7조(목적)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p> <p>9조(회의) 1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함.</p> <p><b>(1) 의결권 유무</b></p> <p>심의는 어떤 안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므로 주로 자문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결정 권한이 없음. 의결은 의결기관인 이사회 등에서 이루어짐. 그러나 “위원회”는 7조에서 분명하게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명칭도 ‘규정심의위원회’라고 명명되어 의결권이 없으나 9조 1항에 의결을 하는 것은 모순임.</p> <p><b>(2) 역할의 모호성</b></p> <p>“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 규정이 없음.</p> <p>심의는 구체적으로 절차상의 적법성, 제정 및 개정 목적의 타당성 및 실제 제정 및 개정 내용이 원래 의도한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타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것을 심의한다는 규정도 없이(권한이 없는) 의결을 함.</p> <p>이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는 규정은 규정입안부서의 이해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3일 이상 학내 공고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도 입안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제개정 내용의 목적적합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제개정 절차의 준수 여부 등 만 검토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음.</p> <p>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상위 기관에서 의결 후 총장의 결재를 받거나, 현재의 규정심의위원회를 규정제개정위원회 등으로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제개정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p> <p><b>2) 전반적인 규정류의 점검필요</b></p> <p>(1) 규정, 시행세칙, 지침(서) 등 규정류는 상위 규정(법령과 정관 및 학칙)에 위배하거나 상위 규정에서 위임한 위임의 한계 내에서 제정되고 타 규정류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p>	<p><b>【감사팀】</b></p> <p>- 현행의 「규정류관리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타 대학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예정임</p>

<p>(2) 금번 학술연구지원규정 개정 사례 등을 살펴보면 현재 상위 규정의 의도와 다르게 제정되거나 규정간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전반적인 규정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b>2. 학술연구지원규정</b>  2023학년도 감사 지적에 따라 2025.1.15.개정된 학술연구지원규정 (“규정”)에서 아래 사항은 재개정이 필요함.</p> <p>1) 제4조(관리원칙 및 관리부서) 1항에 연구비는 교비회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규정이 됨.</p> <p>그러나 4항에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의 선정 및 결과물 관리,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은 산학협력단장 연구지원팀(“관리부서”)에서 한다고 규정이 됨.</p> <p>교비회계를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조직 편제상 “규정”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학교의 교무처나 기획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요청함.</p> <p>2) 제8조의2(교내연구비 선정위원회)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4항에는 동 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규정. 상기 1)과 같은 사유로 산학협력단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함.</p> <p>3) 제10조(연구기간) 2항에 연구 결과물 제출 의무 기한 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만큼 연구결과 논문제출 및 외부과제 수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2024학년도 선정 연구과제부터 소급 적용함.</p> <p>연구기간내 휴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외부기관에 취직이나 파견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논문을 제출할 가능성 낮음.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휴직(예: 1년 이상)의 경우 연구비를 반납하고 향후 복직 시 재지급하는 방안 권고함.</p> <p>본인의 과실로 인한 정직의 경우 논문 제출기한 연장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p> <p>4)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4항: 연구 수행 중 ‘중대한 사유’로 연구과제명과 공동연구자, 게재학술지 구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 기간 내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2024학년도 선정 연구과제부터 소급 적용함.</p> <p>‘중대한 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음—정의 추가 필요</p> <p>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장이 결재한 것을 산학협력단장이 변경</p>	<p><b>【연구지원팀】</b></p> <p>-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 팀장 인사 발령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p>

<p>승인한다는 것은 월권(신설된 별지 16호서식(연구계획변경신청서)의 수신자는 총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이므로 변경의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타당함.</p> <p>5) 11조 5항에 전문학술지 게재 심사 시 학회의 요청으로 논문 제목이 일부 변경이 되는 등 결과 보고 시 과제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기간내 수행된 내용임을 증명하는 논문제목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됨.</p> <p>인정하는 주체가 불분명한데 이 역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타당함.</p> <p>6) 11조 6항에서 상위학술지에서 하위학술지로 변경 시 연구비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신설함.</p> <p>하위학술지 게재 기한이 경과(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2개월)한 후에 상위학술지에서 하위학술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처음부터 하위학술지로 게재한다고 하였을 경우 선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연구과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검토 권고.</p> <p>7) 부칙 1조는 2025.1.15.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2조에서 제10조(연구기간) 2항,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1항 내지 6항, 13조(연구결과물제출) 1항 및 4항, 제19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3항 내지 4항의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선정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p> <p>개정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결재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규정이 2023학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2024년 7월 1일 및 2024년 11월 1일 연구비를 지급하고 감사 지적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해서 규정 개정 후 절차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임---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은 지양하여야 함.</p>	
<p><b>3. 학술연구지원비 관리</b></p> <p><b>1) 주제가 상이한 연구 과제물 제출</b></p> <p>학교 감사팀이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의 연구비 지원 실태를 감사하여 일부 환수 등은 하였으나 감사보고일 현재 감사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조속히 종결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p> <p>연구지원비 회수와 관련한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임. 이미 실시한 5년 이외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 및 2024년에 제출된 연구 중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확인 조치가 필요함.</p> <p><b>2) 시스템의 보완</b></p> <p>학교의 그룹웨어에 연구비 지급, 연구 진행, 사후 관리를 일괄 관</p>	<p><b>【연구지원팀】</b></p> <p>-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 팀장 인사 발령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p>

<p>리하는 시스템(연구과제 결제부터 과제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단계별로 사전 알림을 주는 공개적인 관리 시스템)을 셋업 권고하였으나 개선 사항이 없음.</p> <p>정보전산원 자체의 역량이나 예산 등을 감안 시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셋업하는 것이 어려우면 관리 담당자가 과제번호별로 관리필수사항(연구기간, 논문인정기간, 논문게재기한, 교외연구비수주 의무기한, 연구과제, 논문명, 연구과제와 논문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엑셀로 작성,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자에게 메일 등을 보내 기한의 압박 등을 고지할 것을 권고함.</p>	
<p><b>4. 학교감사팀의 내부감사 사항</b></p> <p><b>1) 산학협력단 외부위탁연구용역 검수 부실 등</b></p> <p>(1) 감사팀은 산학협력단에서 외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서 표절 등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보고서를 다수 발견하였음. 산학협력단의 관리 담당자는 용역보고서 검수 시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작성되고 표절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p> <p>(2) 특정 업체에 특정 기간 내 위탁 용역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한 수의계약을 다수 확인함.</p> <p>(3) 2019년 산학협력단이 외부 위탁한 용역 한 건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p> <p>(4)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 구매한 물품이 자산 등재되지 않은 건이 있음.</p>	<p><b>【연구지원팀】</b></p> <p>-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 팀장 인사 발령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p> <p><b>【산학기획팀】</b></p> <p>-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 팀장 인사 발령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p>
<p><b>2)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 관련</b></p> <p>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위 규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가이드라인’ 및 ‘기술료 표준매뉴얼’에 따라 발명자 및 기여자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격 여부와 실제 기술이전 기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히 객관적, 합리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지급하여야 함.</p> <p>그러나 산학협력단 자체규정에 기술이전 기여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술이전기여자와 보상금 지급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음.</p>	<p><b>【기술경영지원센터】</b></p> <p>2022년 이후 현업부서 업무담당자의 기여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여자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가이드라인’ 및 ‘기술료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합당한 절차를 거쳐 기여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b>5. 정기적인 순환보직 및 업무인수인계 철저</b></p> <p>산학협력단을 포함하여 학교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업무인수인계시 인수자는 전임자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인수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방치, 재발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p>	<p><b>【산학기획팀】</b></p> <p><b>【총무팀】</b></p>

<p><b>6. 감가상각</b></p> <p>1) 건설증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시점  건설증인자산의 본계정 대체를 학년도말에 하고 있으나 본계정 대체 일을 확인하여 본계정으로 계상하고, 본계정 대체일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p>	<p><b>【재무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학년도 결산시 본계정 대체가 학년도말 회계장부에 반영되었으나, 감가상각비는 예산집행 종료월로 각각 계산되어 기반영되었음.</li> <li>- 2025학년도는 각 구축물 및 건물별 건설증인자산 예산집행이 종료되면 본계정 대체를 종료된 월로 회계장부에 반영시키고자 함</li> </ul>
<p><b>7. 발전기금 유치수당</b></p> <p>1) 유치수당 지급 관련 검토  발전기금 중 유치자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지급하고 있음. 전 총장의 경우 당해 학년도 지급액 중 일부를 다음 학년도 모금활동비 예산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여 왔음. 2025년 3월 개정하여 총장은 유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는 발전기금센터 운영 관리 지침 [별표1] 기금 모금액 제반 경비 산출 비율에 따라 15%(10억 이하인 경우)를 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임. 외부인도 교직원과 동일하게 유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음.</p> <p>2) 개선방안  규정에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사회 당시 교직원만 대상이었던바 변경 사유 검토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규정에는 유치수당 지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10% 이내라고 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은 10%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9.12.16.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5%→10%로 변경 결정됨)</p> <p>기부 금액 최고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당시 10억원으로 하였으나 지침에는 별다른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변경 사유 검토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10.8. 발전기금조성위원회에서 상한선 폐지로 변경 결정됨)</p> <p>모금활동비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나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제한되지 않는바 사전 결재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p>	<p><b>【발전기금센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부 유치자 수당 지급 건 「발전기금관리규정」을 개정(2025.6월 중)하여 개정일 이후부터 신규로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외부인에게는 발전기금 유치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li> <li>2. 유치수당 지급 비율 변경 「발전기금센터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개정(2025.6월 중)하여 발전기금(현물 제외)을 연간 500만원 이상 유치한 자에 대해 현금 유치금액의 5%를 발전기금 유치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임</li> <li>3. 유치수당 상한액 지정 건 「발전기금센터 운영 및 관리 지침」을 개정(2025.6월 중)하여 발전기금 유치수당 지급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임</li> <li>4. 모금활동비 관련 모금활동비의 경우 사용처</li> </ol>

및 직무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할 예정임.

피감사기관장

동명대학교 총장

직인 (사인)

